

동물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고찰

유 병 옥*

서 론

축산인이 사육중인 동물의 건강을 위해 축산인 자신이 사양관리하는 것을 동물진료를 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어린 돼지에 철분주사를 놓아 건강하게 사육하는 것은 사양관리이다. 축산인이 원인 모르게 새끼돼지의 발육이 늦고 설사 등 질병에 감염되어 개원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면 수의사가 진료를 한다.

감수성이 있는 약, 다시 말하면 치료가 잘 되는 약과 방법을 선택하기가 수의사 자신도 어렵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며 실행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의사와 축산인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를 개원 수의사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전 개원 수의사의 진료영역에서 닦은 떠났고, 돼지 사육농가도 20년전 떠났다. 젖소농가도 어려운 진료를 제외하면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인과 전문지식을 가진 개원 수의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축산발전으로 기술개발은 향상되었지만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세계속의 한국축산발전을 위해 개원 수의사로서 동물약품 유통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수의사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 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수의사법 제 17조) 수의사법 제 2조(정의)3항 동물진료업은 이미 제정된 아래 실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단순한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거나 폐수검안을 행하는 업보다는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수의사 자신의 처방에 의한 수여의 목적으로 동물약품조제 또는 제조된 약품판매, 동물의료기기판매 또는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로 구체적 표현이 당연한 것은 7년후에 제정된 약사법에 의해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수의사법이 1956년 12월 26일 법률 제 412호로 제정되었고, 약사법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 1492호로 제정되었다.

수의사법에 대한 천륜을 버리고 후에 생긴 약사법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의약품이라 정의하는 모순되고 비상식화한 표현은 간과할 수 없다.

사람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을 포함시켜 농약도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식물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은 왜 없단 말입니까?

고귀한 생명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과 동물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을 비교·해부해 보면 정상적으로 위에 모래가 있어야 하는 닭의 사냥과 선위가 사람의 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사람의 위에 모래알이 들어 있어야 소화가 된단 말인가.

* 명수의과 병원

풀과 짚과 사료가 네말이나 되는 소의 네개의 위가 사람의 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7년후에 생긴 약사법이 수의사법의 동물진료업에 대한 명백한 침해는 축산발전의 크나큰 장애요인이 된다.

동물약품제조회사에서 제조되지 않는 항균제 중에서 일부 약품의 시험결과 동물질병치료에 감수성이 있는 (인체)의약품을 개원 수의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체)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경로가 없다. 의사는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수의사는 사람을 진료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의사는 사람을 진료하고 약사는 사람 의약품 다시 말하면 (인체)의약품을 취급관리한다. 그러므로 수의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를 해야한다. 진료는 진단·치료·예방에 대한 일체의 행위이다.

동물약사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동물약국”이라 함은 동물약품 등의 취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사람 “또는 동물”이란 낱말 하나만 가지고 동물약국도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는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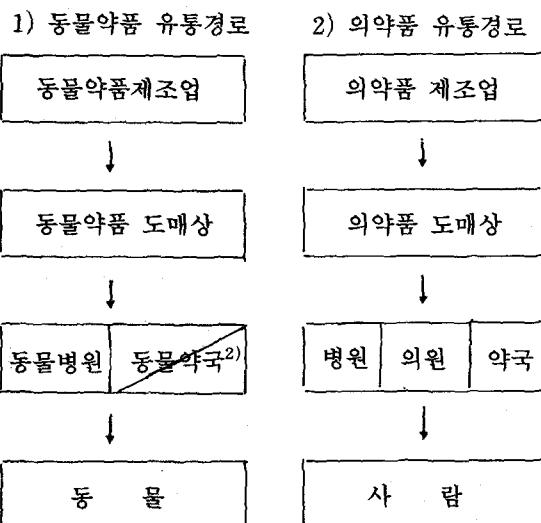


그림 1. 동물 약품 유통경로. 그림 2. 의약품 유통경로. 이래 전국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동물약품 유통경로를 그림 1에서 보면 동물약

국이 있는데 실제로는 동물약국이 전국적으로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의사법의 “동물진료업” 정의가 미흡하여 현재 동물약품도매상에서 소매를 하는 일반 상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산업화 및 동물병원 개설수의사의 인식부족과 조치방법이 미흡하여 약사법에 의한 동물약품 취급규칙에서 관리약사 면허증사본만 있어도 동물약품도매상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해부족으로 일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동물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여 왔던 것이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7000여 수의사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자는 무자격 종업원을 다수 고용하여 농가 직접방문 배달판매 및 무자격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게 되었다. 무자격자가 기동력있는 약품수송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진료를 하는 실정이다.

동물약품도매상을 개설한 자는 수의사의 권익을 짓밟고 배불리 무자격 종원원을 다스리다 보면 무자격 종업원의 불만과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도매상의 운영방식을 알고 또 다시 무자격 동물약품도매상의 개설이 남발된다. 전국 500여 무자격 동물약품도매상이 무자격자를 고용, 무분별하게 농가에 직접방문 소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약품제조회사 및 영업소가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하여 동물약품도매업소에 배치하여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하고 특정 동물약품도매상에 대량 유통하여 판매권을 장악하는데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 론

수의사의 권익옹호가 수의사 자신의 능력배양 및 축산발전과 국력신장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수의사의 권리옹호와 축산발전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및 개업수의사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의사법의 보완

1) “動物診療業”이라 함은 “動物의 健康과 疾病을 診斷·治療·輕減·處置 또는豫防하거나 處防에 의한(授與의 目的으로) 동물약품조제 또는 판매, 동물醫療用具 및 器具器械 販賣 또는 動物健康診斷 및 鞭獸檢案을 行하는 業”을 말한다고 改正補完해야 한다.

개정이유 : 1956년에 法律 第 412號로 제정되어 1963년 법률 제 1491호로 제정된 약사법으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보완되어 동등한 권리보장이 되어야 한다.

2) 動物病院이라 함은 動物診療業을 行하는 場所(그 開設者가 動物藥品 및 동물 醫療用具 또는 器具機械販賣業을 兼하는 경우에는 그 販賣業에 必要한 場所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개정이유 : 동물은 대동물 및 다수사육으로 왕진(往診) 및 치료를 함으로 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보다 연락장소 및 판매업 사무실이 더욱 절실하고 애완동물은 예외인 경우가 있다.

2. 전국의 동물약품도매상 위법행위를 응징

개업수의사가 도매상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협조로 연계하여 동물약품도매상에서 소매를 할 수 없다는 응징대책을 강화하여 실행한다.

응징이유 :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에서만 농가에 필요한 경우 자격자로서 판매할 수 있다. 도매업으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무자격자로서 농가에 직접진료 또는 소매행위는 위법이다.

3. 대한수의사회 및 개업수의사 주관으로 7,000여 수의사 가족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야한다.

이유 : 30년간 원인무효 소멸된 동물약국을 농수산부령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에 방치함으로써 농수산부령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을 농수산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으로 전면 개정보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은 큰 비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의사법 제 15조(진료 기술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물은 전문지식을 전공한 수의사와 축산인이 건강관리 및 사양관리를 하여 축산업 발전 및 직·간접적으로 양질의 식육을 생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미흡한 小考이오나 수의사 가족의 根幹이 되길 바라며 소고를 맺는다.